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항공안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모의비행장치를 모의비행훈련장치로 용어를 변경하고, 모의비행훈련 장치의 지정 신청·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 등의 대여·알선의 금지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8187호, 2021. 5. 18. 공포, 2021. 11.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항공기 제작자 또는 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 중인 항공기를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항공기의 범위에 추가하고, 감항성개선지시 연구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신기술 항공기 등의 연구·개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연구·개발 중인 항공기의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항공기 제작자 또는 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 중인 항공기”를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항공기의 범위에 추가함(안 제4조제5호)
- 나.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를 위한 감항성개선 명령 등을 위한 연구업무 위탁근거 마련(안 제26조제10항제1호의2)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정비등에 관한 감항성개선 또는 그 밖의 검사·정비 등을 명하기 위한 기술검토, 연구·분석 및 관리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다.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 대여·알선 등 위반행위 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5)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증명 대여·알선 금지가 의무화하도록 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예에 따라 위반 시 과태료 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항공안전 확보를 위한 법령상 의무 준수 독려를 위하여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부과기준 범위를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항공기 제작자 또는 연구기관 등이 연구·개발 중인 항공기
제26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의2부터 제11
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검사 및 유효
기간 연장 검사

11의2.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서 발급

11의3. 법 제39조의2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11의4. 법 제39조의2제5항에 따른 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을 받은자에
대한 지정 취소 및 효력 정지

제26조제10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23조제9항에 따른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정비
등에 관한 감항성개선 또는 그 밖의 검사·정비등을 명하기 위한 기
술검토, 연구·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별표 5 제1호가목 전단 중 “1년간”을 “5년간”으로 하며, 제2호허목을 다
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허목부터 오목까지를 각각 고목부터 조목까

지로 한다.

허. 법 제1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게 하거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려 준 경우 2)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을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빌린 경우 3) 1) 및 2)의 행위를 한 경우	법 제166조 제2항제4호	150	225	300
--	-----------------------	------------	------------	------------

부 칙

이 영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항공기의 범위) 법 제7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1. ~ 4. (생략) <u><신 설></u>	제4조(등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항공기의 범위) ----- ----- ----- -----.
제26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한다. 1. ~ 10. (생략) 11.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u>모의비행장치의 지정</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제26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탁) ① ----- ----- ----- -----. 1. ~ 10. (현행과 같음) 11.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u>모의비행훈련장치의 지정 검사 및 유효기간 연장 검사</u> 11의2.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u>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서 발급</u> 11의3. 법 제39조의2제4항에 따른 <u>유효기간 연장</u> 11의4. 법 제39조의2제5항에 따른 <u>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u>

12. ~ 60. (생략) ② ~ ⑨ (생략)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조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한다. 1. (생략) <u><신설></u> 2. ~ 5. (생략)	<u>받은자에 대한 지정 취소 및 효력 정지</u> 12. ~ 60. (현행과 같음) ② ~ ⑨ (현행과 같음) ⑩ ----- ----- ----- -----. 1. (현행과 같음) <u>1의2. 법 제23조제9항에 따른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정비등에 관한 감항성개선 또는 그 밖의 검사·정비등을 명하기 위한 기술검토, 연구·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u> 2. ~ 5.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4255